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2000219

신 청 인: 쿠팡 주식회사(대리인 : 변호사 박기범, 변리사 장홍석)

피신청인: seosungyoun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쿠팡 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

대리인 : 변호사 박기범, 변리사 장홍석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9 세양빌딩

피신청인: seosungyoun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38번길 23 초원빌딩

나동 202호(51669)

분쟁 도메인이름은 coupang-card.com, coupang-bank.com,  
coupang-card.net, coupang-bank.net, coupangcard.net,  
coupangbank.net"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주)메가존(서울

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46 메가존빌딩 6, 7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20. 5. 28.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20. 6. 4.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20. 6. 10.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20. 6. 10.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20. 6. 30.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20. 6. 30. 까지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0. 7. 1.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정찬모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20. 7. 1.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20. 7. 3.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 '쿠팡 주식회사'는 전자상거래 및 그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그의 상호 상표이자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COUPANG"(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함) 및 그와 관련된 여러 표장들을 상표로 등록하고 있다(갑 제2호증).

피신청인은 일견 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허여 받은 바 없음에도 2020. 4. 17. 자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적극적 사용없이 이와 연결하여 도메인이름 등록 이전에 관한 호스팅업체가 제공하는 간단한 정보와 '사이트 구축 중' 이라는 표시만 게시하고 있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이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표장과 극히 유사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마치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피신청인이 이 도메인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은 자신에게 이전 또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신청인 회사는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는 1위 업체로서 2019년 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하루 주문 건수는 평균 6~7만건에 이르며 월평균 이용자 수는 1,200만 여명에 이르는 바 이 사건 표장의 저명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에서 확장자인 “.com”, “.net”을 제외한 부분은 신청인의 등록표장인 “coupang”에 일상적인 영어 단어인 ‘bank’ 또는 ‘card’가 결합된 것으로 누구나 쉽게 분리 관찰 가능하고 결합에 의해서 특별히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도 않으며, 그 요부는 신청인의 표장과 완전히 동일하여 전체적으로도 이 사건 표장과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 인정된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에게 이 사건 표장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허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표장이 일상적인 표현이 아닌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이 표장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위와 같이 신청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명한 이 사건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이름들을 다수 등록, 보유하여 수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 이외에도 이 사건 표장은 물론 제3자의 저명한 표장이 포함된 다수의 도메인이름들을 등록·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 목적이 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는 데에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게 한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 coupang-card.com, coupang-bank.com, coupang-card.net, coupang-bank.net,

coupangcard.net, coupangbank.net >을 신청인에게 이전 할 것을  
결정한다.



---

1인 행정패널

정찬모

결정일: 2020년 7월 15일